

▶ 자 퇴 원 ◀

인적사항	성명		생년월일		
	학번		소속 학급		
	연락처		비상연락	010 - [부□ 모□]	
	주소				
내역	첨부서류	<input type="checkbox"/> 보호자동의서 <input type="checkbox"/> 보호자 통장 사본 <input type="checkbox"/> 타대학 합격증 사본 <input type="checkbox"/> 상담일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성적증명서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	
	<i>등록금 환불시 반환받을 계좌 [반환금 발생시 기록. 없을 경우 미첨부]</i>				
	은행	계좌번호	예금주	환불자와의 관계	
				<input type="checkbox"/> 부 <input type="checkbox"/> 모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[]	
본인은 위와 같이 자퇴원을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: (서명/인)					
※ 필독 사항					
1.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(제4조제2항 관련)에 따라 자퇴일이 개강일 기준 1/6까지는 총수업료의 5/6, 1/6이상부터 1/3미만까지는 총수업료의 2/3, 1/3이상부터 1/2미만까지는 총수업료의 1/2, 1/2이상 경과시는 반환금액이 없다. 2. 휴학 중인 경우는 휴학일 기준으로 반환금이 책정되며, 학점신청비는 학점신청 여부에 따라 환불한다. 3. 학생회비는 개강 전 자퇴자에 한해서만 환불한다. 4. 등록금 반환일은 다음 달 15일에 환불한다.					
지도교수 의견 및 특이사항					
상담일자 : 지도교수 : (서명/인) 학부장 : (서명/인)					
교학처 접수 /	기준휴학일		<input type="checkbox"/> 군휴학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휴학 <input type="checkbox"/> 질병휴학		
	납입학기	납입일		납입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카드 <input type="checkbox"/> 통장 입금
	등록금(학습비)	공제액		공제내역	
	환불내역			학점신청비	환불일
	환불총액	해당월	개강 전 1/6 1/3 1/2 1/2이상		

